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석재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 타당성 조사에 대한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한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641호, '23. 8. 16. 공포, '24. 2. 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요건을 개선함(안 제18조)

지정요건의 “지정대상지역 내에” 위치하여야 하는 전문인력양성기관 또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을 “지정대상지역이 소재하는 시·군·구”로 확대함

나.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신청의 절차를 정비함(안 제19조)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 및 신청방법 등 절차를 정함

다. 석재사업자의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신청에 따른 타당성 검토 절차를 정함(안 제19조의2제1항, 제2항)

타당성조사 내용, 사업계획의 적합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라. 석재산업진흥지구 타당성조사 기관을 업무위탁 규정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정함(안 제19조의3제1항, 제2항)

타당성조사 기관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으로 하고, 조사에 필요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
도록 함

마. 위탁기관에 추가된 한국산림토석협회의 위탁업무를 정함(안 제23조)

석재산업 전문인력양성기관 신청의 접수 등 위탁업무를 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호 중 “지정대상지역”을 “지정대상지역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을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석재사업자가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및 제3호 및 제4호 중 “지정”을 각각 “지정 또는 변경”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석재사업자는 신청서에 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하는 제출서류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제3항 중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지정대상지역”을 “석재산업진흥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지정 또는 변경 대상지역”으로, “지정 여부”를 “지정 또는 변경 여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정한”을 “지정 또는 변경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법 제17조제3항”을 “법 제17조제5항”으로 한다.

3.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석채산업진흥지구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의 개요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타당성 검토 절차)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채사업자의 석채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석채산업진흥지구 타당성조사 내용의 적합성
2. 석채산업진흥지구 사업계획의 적정성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채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변경 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육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제19조의3(타당성조사 기관) ①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타당성조사 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타당성조사 기관은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수수료의 고지·납부 및 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림청장”을 “산림청장등”으로,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한다”를 “한국임업진흥원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한국산림토석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석재 부산물·폐기물 재활용 대책 및 연구개발 사업
9. 법 제7조에 따른 석재산업 전문인력양성기관 신청의 접수
10. 기타 산림청장등이 위탁하는 석재산업 진흥과 관련된 업무

부 칙

이 영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요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석 재산업진흥지구(이하 “석재산업 진흥지구”라 한다)의 지정은 다 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 역을 대상으로 한다.	제18조(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요건) ----- -----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u>지정대상지역</u> 내에 전문인력양 성기관 또는 석재산업 진흥을 위 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 학이나 연구기관이 있을 것	3. <u>지정대상지역이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구를 말한다)</u> ----- ----- ----- -----
제19조(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절차 등) ① <u>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을 받으려는 시 · 도지사 또는 시 장·군수·구청장은</u> 미리 다음각 호의 사항에 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절차 등) ① <u>법 제17조제2항에 따 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 청장이나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석재사업자가 석재산업진흥지구 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 경 우에는</u> ----- -----.
1. 석재산업진흥지구의 <u>지정</u> 필요 성	1. ----- <u>지정 또는 변경</u> ----- -----
2. 지정대상지역의 석재산업진흥 지구 <u>지정</u> 의 적합성	2. ----- ----- <u>지정 또는 변경</u> -----

④ 산림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로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④ -----
-----지정 또는 변경한-----

을 관보 또는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정사실을 알려야 한다.

1. · 2. (생략)

3. 육성계획의 개요

⑤ (생략)

⑥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산림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⑦ (생략)

〈신설〉

-----.

1. · 2. (현행과 같음)

3.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석재산업진흥지구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의 개요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17조제5항-----

-----.

⑦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타당성 검토 절차) ① _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재사업자의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석재산업진흥지구 타당성조사 내용의 적합성

〈신 설〉

제21조(석재사업자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석재사업자협회(이하 “석재사업자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2. 석재산업진흥지구 사업계획의 적정성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변경 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육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제19조의3(타당성조사 기관) ①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타당성조사 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타당성조사 기관은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수수료의 고지·납부 및 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삭 제〉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석재사업자협회의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회원 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선출과 임면에 관한 사
항

7.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재정·회계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남은 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석재사업자협회의 운
영에 필요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석재사업자협회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석재사업자협회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업무의 위탁) 산림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임업 및 산촌 진
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한다.

1. ~ 6. (생략)

7. 제19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제23조(업무의 위탁) 산림청장등-

----한국임업진흥원 또는 「산지
관리법」에 따른 한국산림토석
협회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1. ~ 6. (현행과 같음)

<삭 제>

<u>〈신 설〉</u>	8. <u>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석재 부산물·폐기물 재활용 대책 및 연구개발 사업</u> 9. <u>법 제7조에 따른 석재산업 전문인력양성기관 신청의 접수</u> 10. <u>기타 산림청장등이 위탁하는 석재산업 진흥과 관련된 업무</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림청 산지정책과	
연 락 처	(042) 481 - 4193